

Muan Web Contents

2023년 11월 30일 20시 05분



목차

목차	2
이전등록	3
자동차 이전등록 안내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등록기간	3
구비서류	3
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	3
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	4
특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?	5
구비서류	5

신규등록	이전등록선택됨	변경등록	말소등록
저당권설정/말소등록	임시운행허가	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	등록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등록원부발급			

자동차 이전등록 안내

수수료

- 중지대 1,000원, 인지대 3,000원, 취득세, 공채(전라남도 내)
- 중지대 1,500원, 인지대 3,000원, 취득세, 공채(전라남도 외)

관련법규

관리법12조, 등록령26조, 등록규칙33조

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
매매, 경락, 공매, 법인합병 등	매매, 증여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
상속	발생일(사망일)로부터 6개월 이내

※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

거래관계	구비서류
공통 서류	① 양도인 (매도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감증명서 1부(법인→법인인감증명서) ▪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(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) ▪ 자동차등록증 ▪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(체납시 이전등록 불가) ▪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·양수인이 날인(도장)하여야 유효합니다.(본인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)
	② 양수인 (매수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신청서 ▪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▪ 번호판(2개), 봉인(전국번호, 전남도내 자동차는 제외) ▪ 본인 신분증(오신 분 신분증) ▪ 위임시 : 위임 받는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▪ 법인 : 위임 받는자 신분증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도장날인)

거래관계		구비서류	
추가서류	개인	③양도인 (매도자)	추가서류 없음
		④양수인 (매수인)	조세감면대상자 : 장애자증,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
	법인	⑤양도인 (매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부 등본(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) ■ 사업자등록증명원(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)
		⑥양수인 (매수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자등록증사본1부(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) ■ 법인인감증명서1부(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)
	개인 사업자	⑦양도인 (매도자)	사업자등록증명원1부(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)
		⑧양수인 (매수인)	추가서류 없음
	참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공통서류 +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■ 예시)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: ① + ② + ⑥ ■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: ① + ② + ④ ■ 신고자는 양수인(매수자)이며 양수인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차량등록민원실 어디서나 등록 가능 합니다(단,영업용 및 차고지 증명은 사용본거지에서 등록) 	

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

구분	구비서류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이전등록신청서 ■ 자동차등록증 ■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■ 본인 신분증(오신 분 신분증) (위임시 위임 받는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) 	
추가 서류	상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망자 기준(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) ■ 상속포기서(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부) ■ ※ 유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상속자 : 배우자 및 직계비속 ■ 상속순위(상속자가 없을 경우) : 1)직계존속, 2)형제 · 자매, 3)4촌이내 방계혈족 ■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. ■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상속 포기서 첨부후 폐차가 가능
	법원경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락결정 등본 (법원) ■ 경락대금완납증명서 (법원) ■ 이전등록촉탁서 (법원)
	확정판결	판결문 원본(법원)
	법인합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인등기부등본(합병사항 기재된 등본) ■ 법인합병계약서 ■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■ 법인 인감증명서

(<http://www.muang.go.kr>)

구분	구비서류
법인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■ 법인인감증명서 ■ 감정평가서 사본 ■ 법인등기부등본 ■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
공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(공매기관) ■ 공매금액납부영수증
관용차량 매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불용처분매각결정서(매각기관) ■ 매각대금납부영수증(매각기관)
양도인 강제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양도증명서 (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) ■ 인감증명서 (양도인) ■ 내용증명서 (2회이상(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)) 발송 근거서류 ■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■ 양도인 신분증 ■ 법원 확정 판결문

특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?

- 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. 과태료,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안정한 소유권이전입니다.
-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,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(부모등)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.
-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.
-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※ 국가유공자(장애인포함)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.
- 아버지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 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.
-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기간	금액
매매	기간경과 후 10일내	10만원
	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	1만원 (최고50만원)
상속	기간경과 후 10일내	10만원
	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	1만원 (최고50만원)
법인합병 경락등	기간경과 후 10일내	10만원
	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	1만원 (최고50만원)
양수자(매수인)	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	5만원

(<http://www.muau.go.kr>)

COPYRIGHT ©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muan.go.kr>)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